

3.1.23 등록금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정 2014. 02. 28.
개정 2018. 02. 27.
개정 2018. 10. 23.
개정 2019. 02. 01.
개정 2019. 06. 04.
개정 2020. 03. 31.
개정 2021. 01. 28.
개정 2022. 10. 04.
개정 2024. 06. 03.
개정 2024. 07. 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등록금의 합리적 책정과 예·결산의 심사·의결을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관련전문가(본 대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부모 또는 동문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3., 2021.01.28.>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2.01., 2019.06.04.>

1. 교직원 : 4인
2. 학생 : 3인
3. 관련전문가 : 1인
4. 동문 또는 학부모 : 1인 <신설 2019.02.01.><개정 2019.06.04.>
5. 삭제 <2019.06.04.>

제3조(추천 및 위촉) ① 교직원을 대표하는 위원은 대학의 주요정책 및 교비회계에 충분한 식견을 갖춘 자 중 기획연구처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03.31.>

② 학생을 대표하는 위원은 본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 총학생회에서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03.31., 2024.06.03.>

③ 전문가 위원은 관련분야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중 기획연구처장이 학생을 대표하는 측과 협의하여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03.31., 2021.01.28.>

④ 동문을 대표하는 위원은 초당대학교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자 중 총동문회에서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03.31.>

⑤ 학부모를 대표하는 위원은 재학중인 학생의 부모 중 학과 또는 부서에서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03.31.>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선임된 교직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4/10 이상의 위원이 목적을 적시하여 소집을 요청할 때 <개정 2022.10.04.>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전까지 E-mail, SNS, 유선통화, 서면 또는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일정 및 목적을 사전 공지한다. 그리고 회의자료는 회의개최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전까지 송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03.31., 2021.01.28., 2022.10.0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조항 이동 2018.02.27>

제7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등록금) 책정 <개정 2022.10.04.>

2. 예·결산 심사·의결

3.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자료요청권) 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28.>

제9조(심의결과)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회의일부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게재일부부터 3년 이상 공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02.27., 2021.01.28., 2024.07.23.>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18.02.27>

2. 공개될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18.02.27>

3.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신설 2018.02.2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한다. <신설 2018.02.27>

제11조(업무처리) 위원회의 업무지원은 기획연구처에서 주관하며, 업무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6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7월 23일부터 시행한다.